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8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96,564,270원, 농어촌특별세 2,461,990원, 지방교육세 7,751,660원 합계 106,777,920원(가산세38,753,85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139,138,890원, 농어촌특별세 3,572,770원, 지방교육세 16,674,940원 합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159,386,600원(가산세 50,183,9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시 ○○동 일원에 지정된 ○○○길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합니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가 2015. 12. 31.과 2016. 12. 31. 각 준공됨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시 ○○동 산 36-5 외 287필지 67,474㎡, 같은 동 0-00 외 49필지 7,054㎡ 합계 74,528㎡를 각 무상 취득하였고(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무상취득 토지'라 한다), 2016. 3. 10. 및 2017. 3. 16.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 무상취득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1]는 2021. 2. 16. ○○시 ○○동 산 00-0 외 287필지 67,474㎡ 토지 중 38,222㎡(이하 '제1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동 0-00 외 49필지 7,054㎡ 중 3,829㎡('제 2 토지'라 한다)가 공공시설 외 용지로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21. 2. 19. 다음과 같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266,164,5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표준(원)	취득세 (가산세포함, 원)	지방교육세 (가산세포함, 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포함, 원)	소계(원)
제1토지	4,845,437,700	96,564,270	7,751,660	2,461,990	106,777,920
제2토지	6,625,362,000	139,138,890	16,674,940	3,572,770	159,386,600

1) 당초 이 사건 처분은 ○○시장 명의로 하였으나, 해당 처분과 관계되는 ○○시장의 사무가 행정체제 개편 및 ○○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승계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합계	266,164,52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1.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가 제1, 2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시 사업 준공 이후 변경된 지목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사업지구 준공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준공 전 각 지목, 현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유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조 제1, 2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와 같은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제1, 2토지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취득할 당시인 2015. 12. 31.과 2016. 12. 31.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과세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위법성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26. 이 사건 사업지구의 취득세 과세비율을 43.17%로 협의하였고, 이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토지면적을 사업지구면적 중 유상취득 토지면적으로 안분한 비율로 유상취득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과세표준 및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7250 판결의 취지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비율(43.17%)에 따른 종전 취득세 신고·납부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필지에 관한 정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시점별, 필지별 취득세 면제여부나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개별 필지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신고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감면 없는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의 면적을 관념적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사업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즉 '감면 없는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면적 ÷ 유상취득 토지면적', 이 사건에서의 '과세비율'임)을 산출하고 토지의 유상취득 과정에서 유상취득 토지 전체 면적에 위 과세비율을 곱한 다음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면, 이로써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납부된 결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 토지 등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동되거나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 등이 변동되면 위 과세비율 역시 변동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에 사이에 취득시점의 차이[2]로 인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였으므로[3], 원고가 토지의 유상취득 과정에서 유상취득 전체 토지면적에 과세비율을 곱한 다음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전체 토지(유상취득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포함)에 대하여 개별 필지별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취득세액보다는 상당히 과소하게 된다[4].

2)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유상취득은 대부분 2012년 이전, 일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무상취득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3) 원고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2014년까지는 75%가, 2016년까지는 30%가, 2019년까지는 20%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었는바, 다른 취득세 감면 사유가 없는 토지라면 유상취득 토지와 무상취득 토지 모두 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전체 면적 1,329,668.7㎡ 중 전술한 무상취득 토지 면적 74,528㎡를 제외한 부분) 중 201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993,422.3㎡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또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취득세 과세비율 등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해당 사정만으로 원고가 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유상취득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무상취득 토지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용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유상취득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와 과세대상이 다른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는 공공주택상법의 특성상 수차례 공공시설 외 용지 면적이 변동되어 원고가 그때마다 피고에게 과세비율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 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외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경감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

4) 감면 없는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의 면적을 사업지구 내 유상취득 토지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전체면적으로 나누어(즉 '감면 없는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의 면적 ÷ 사업지구 전체면적') 과세비율을 산정하고, 유상취득 전체 토지면적에 위 과세비율을 곱하여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처리하고, 무상취득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를 납부 처리한다면, 개별 필지별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취득세액과의 편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종합운동장 도시개발구역사업 부지와 관련된 원고의 과세비율 산정 및 취득세 납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족세액에 관하여 가산세를 산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갑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2.경 토지이용계획 변동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무상공급토지 및 비과세 토지 등의 각 토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계산한 과세비율 43.17%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5] 변경된 과세비율을 반영하여 기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수정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았고, 제1, 2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한 가산세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원고가 작성한 자료(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사업지구전체 면적과 무상취득토지 면적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2013. 2. 26.경 취득세율 계산 당시 기부채납(무상공급) 토지면적이 671,501.7㎡, 100% 취득세 면제토지면적이 115,867㎡이었으나, 2015. 7. 22.경에는 기부채납(무상공급) 토지면적이 658,364.7㎡, 60㎡이하 임대주택 토지면적이 73,544㎡로 변경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재판장 판사 호○○

판사 신○○

판사 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별지

관계 규정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끝)